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122831 판결 [가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생각

담당변호사 안정훈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 주식회사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7.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5.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중 필터 1회용 마스크 1억 개의 공급에 관한 물품 납품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6.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계약금 2,800만 원(본 계약1)의 계약금 28억 원의 1%)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이 사건 가계약은 납품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할 시점까지 유효하며, 본 계약은 2020. 6. 5.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원고)과 을(피고 회사)이 협의하여 본 계약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물품 납품 계약의 요약)

을는 갑과 사전 협의된 계약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① 납품 내역

가. 물품명: 3중 필터 일회용 마스크

나. 납품 개수: 1억 개

다. 납품 단가: 280원

라. 총 납품 금액: 280억 원

③ 물품 대금의 지급: 계약금 - 발주 납품 금액의 10% (계약체결 당일 현금 지급)

제6조 (자료의 제공)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①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즉시 갑은 을에게 총 계약금 중 1%를 현금으로 즉시 선지급하고, 본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 잔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 후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선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20. 6. 4. 피고 회사에게 '제품설명서(시험성적서, FDA/CE 인증서), 인보이스, 예상수출패킹리스트, 보증이행 담보서류, 법인인감증명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장과의 직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과 진행 예정될 공장 서류(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0.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는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할 때 제공하는 항목일 뿐, 가계약 상태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면서, 2020. 6. 5. 영업시간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계약이 해지되고 가계약금은 몰취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의 계약금이 입금되면 마스크 관련 자료의 공유 및 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가계약 상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가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가계약은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이 사건 가계약금은 이 사건 가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20. 6. 4. 피고 회사에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제공을 거절한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 및 관련 서류'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부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가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료가 본 계약 체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가계약으로 인하여 체결될 본 계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의무는 이 사건 가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21. 5. 27. 피고 회사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가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 2,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계약 제6조 제2항의 자료제공의무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제6조 제2항의 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발생의 조건이나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위 의무는 이 사건 가계약 체결로써 발생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위 의무를 본 계약 체결 및 본 계약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가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가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금이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계약 제3조에서 본 계약을 2020. 6. 5.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이 사건 가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협의로 본 계약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0. 6. 5.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가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계약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원고가 임의로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피고 회사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계약금 지급일인 2020. 6.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1. 5. 27.까지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별지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마스크 납품 가계약체결 및 가계약금 4,8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1) 원고는 2007. 12. 3. 설립된 가방, 잠화류, 견직물 등 제조와 판매, 그와 관련된 무역업과 통신판매업,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조 납품하기로 한 회사들입니다.

(2) 원고는 2020년경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마스크를 구매하여 수출하기로 하고 제조업체를 알아보던 중, 2020. 6. 1. 당일 처음 만난 마스크 브로커인 소외 F 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군데 제조업체인 피고들과 연이어 마스크 납품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먼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 은 2020. 6. 1. 소외 F 가 소개를 한 피고 B 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표 C 를 만나 마스크 1억 장을 1개당 280원 총 280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계약금 중 1%를 선지급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그리고, G은 2020. 6. 1. 피고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 F의 소개로 다른 회사인 피고 D도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한다고 하여 대표 H을 만나 마스크 1억 장을 300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가계약금으로 같은 날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 또한, G은 2020. 6. 1. 소외 F가 소개를 한 피고 E 사무실로 이동하여 대표 I를 만나 마스크 1억 장을 1개당 287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으로 같은 날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 B의 '제품설명서' 등 제출 거부 및 일방적 가계약금 물위에 대하여

(1) 원고는 2020. 6. 5.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물품 납품가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에 따라 2020. 6. 4. 피고 대표에게 '제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장과의 직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과 진행 예정될 공장 서류' 등을 자료 요청 건의 메일을 받

송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B 는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할 때 당사자로서 이행하는 항목이고 가계약 상태에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원고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2020. 6. 5.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을 몰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마스크 납품계약은 계약금액이 28억 원에 이르는 큰 계약인데 반하여 피고 B 가 1억 장의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이 물품납품가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제출을 거부하고 가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몰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이는 피고 B 가 1억 장의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가 수량확보에 급급하여 계약금 28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위와 같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자 계약대로 납품할 수 없다는 사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먼저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 D 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1) 피고 D []의 대표 H []은 2020. 6. 1. 가계약 체결 시 파주공장에 마스크 생산기계가 12대가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공장 실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5.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파주공장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기계는 2대 밖에 없고 10대는 이전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약 기간 내에 1억 장을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2020. 6. 4. 피고 대표에게 ‘제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장과의 직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과 진행 예정될 공장 서류’ 등을 자료 요청 건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피고 D []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D []은 원고에게 마스크 1억 장을 제조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가계약금만 가져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 E []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는 2020. 6. 4. 피고 E [] 대표에게도 ‘생산 공급가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장과의 직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과 진행 예정될 공장 서류’ 등을 자료 요청 건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피고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E [] 역시 원고에게 마스크 1억 장을 제조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가계약금만 가져간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2. 피고들의 가계약금반환의무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납품제품 구매에 관한 증빙 및 관련 서류의 제공 요청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계약상 및 신의칙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을 거절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자료제공 거부로 피고들의 마스크 제조 납품 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본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수령한 가계약금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는 금 28,000,000원, 피고 D 은 금 10,000,000원, 피고 E 는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가계약 이후 체결이 예정된 마스크 1억 개 공급에 관한 정식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